



대전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수신 수신자 참조

(경유)

제목 의료기기 회수 종료 보고(알림)[(주)세라젬]

1. 관련

- 가. 의료제품안전과-7839호(2022. 7. 5.)
- 나. 「의료기기법」 제34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2조
- 다. 「의료기기 회수·폐기 등 업무 처리 지침」

2. 위 호 관련, 다음 의료기기에 대하여 회수가 종료되었음을 알려드리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회수 종료 대상 >

업체명 (업허가번호)	품목명 (허가번호, 모델명)	제조번호 (제조일자)	위해성 정도	회수 사유
(주)세라젬 (제697호)	개인용초음파자극기 (제허20-57호, CGM MBD-1901)	MBDMTD00346 (2020.4.22.)	위해성 정도 2	수거검사 부적합 (누설전류, 출력 전류의 정확성, 인터록 시험)

끝.



대전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

수신자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의료기기관리과장),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의료기기안전평가과장),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장(첨단의료기기과장),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장(심혈영상기기과장),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장(정형재활기기과장),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장(구강소화기기과장),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장(체외진단기기과장),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운영지원과장),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의료기기안전관리과장), 부산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운영지원과장), 부산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의료제품안전과장), 경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운영지원과장), 경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의료제품안전과장), 경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의료제품실사과장), 대구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운영지원과장), 대구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의료제품안전과장), 광주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운영지원과장), 광주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의료제품안전과장), 운영지원과장, 의료제품실사과장, 국방부장관(물자관리과장), 보건복지부장관(보험급여과장),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건강보험심사평가원장, 한국의료기기안전정보원장, (사)대한병원협회장, 대한의사협회장, (사)한국의료기기산업협회장, (사)한국의료기기공업협동조합 이사장, (사)한국치과기재산업협회장, (사)한국의료기기유통협회장, 서울특별시, 부산광역시, 대구광역시, 인천광역시, 광주광역시, 강원도지사, 대전광역시, 충청북도지사, 울산광역시, 충청남도지사, 경기도지사, 전라북도지사, 전라남도지사, 경상북도지사, 경상남도지사,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세종특별자치시

주무관	임재훈	주무관	이승노	과장	전결 2022. 7. 19. 박중필
협조자					
시행	의료제품안전과-8585	(2022. 7. 20.)		접수	
우	35209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66, (둔산동)			/ http://www.mfds.go.kr
전화번호	042-480-8775	팩스번호	0502-604-7992	/ jhlim0106@korea.kr	/ 대국민 공개